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받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강서구, 기장군

내 용

부산광역시에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신청자격,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제40조의4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밭농업 재배면적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밭농업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자인 농업인이 각 직불제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직불제 등록(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이용여부 등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 재배농지 면적의 합이 1,000㎡ 미만으로 현장점검 결과가 전산시스

템으로 지자체에 전송되었으며, 그 결과를 지자체에서는 지급요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밭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함)로 하며, 다만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밭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를 전용 하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밭직불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장군에서는 전송된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행 및 불일치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 직불제 사업대상자 지급 제외요건 중 농지면적(밭농업)의 합이 1,000㎡ 미만인 대상자와 농지전용 필지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표 1】 “밭농업직불금 1,000㎡ 부당지급 현황” 및 【표 2】 “밭농업직불금 농지전용 부당지급 현황”과 같이 해당 필지의 직불금 신청자에게 2014~2016년까지 총 27호 농가, 361,940원의 밭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1】 발농업직불금 1,000㎡ 미만 부당지급 현황

구군별	직불금 지급내역(㎡, 원)			직불금 회수대상내역(㎡, 원)	
	수령자	지급면적	지급금액	회수대상면적	회수금액
합계 (A+B)	27	14,347	372,380	14,086	361,940
소계(A)	25	12,116	292,240	12,116	292,240
기장군	25	12,116	292,240	12,116	292,240

【표 2】 발농업직불금 농지전용 부당지급 현황

구군별	발직불금 지급농지(㎡)			발직불금 지급내역 (㎡, 원)					재검토결과 회수해야 할 직불금 (㎡, 원)				
	건수	농지면적	전용면적	지급면적		지급액			회수대상면적		회수금액		
				고정	26품목	계	고정	26품목	고정	26품목	계	고정	26품목
소계(B)	2	2,231	1,970	400	1,831	80,140	6,900	73,240	400	1,570	69,700	6,900	62,800
강서구	1	1,831	1,570		1,831	73,240		73,240		1,570	62,800		62,800
기장군	1	400	400	400		6,900	6,900		400		6,900	6,900	

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 기장군수는

【시정】 발농업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지급된 발농업직불금 361,940원을 회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